

# 임원 퇴직금 지급확인서

| 본인/<br>인감확인 | 담당 | 팀장 |
|-------------|----|----|
|             |    |    |

한국투자증권(주) 귀중

## ■ 기본사항

|       |             |
|-------|-------------|
| 가 입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계산

|                                                            |                                        |
|------------------------------------------------------------|----------------------------------------|
| ①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② 2012.1.1~2019.12.31 간 근무기간(개월)       |
| ③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2020.1.1 이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④ 2020.1.1 이후 근무기간(개월)                 |
| 퇴직소득한도<br>(① × 1/10 × ②/12 × 3)<br>+ (③ × 1/10 × ④/12 × 2) | 2011년 12월 31일<br>기준 부담금 <sup>주1)</sup> |

주1) 2011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 (2011년 12월 31일 기준 미납된 부담금 포함)

2011년 12월 31일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제출 여부 ☐ 제출 ☐ 미제출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1) 임원에 대한 한도계산대상 퇴직소득금액 = ㉠ - ㉡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MAX  $\left[ \begin{array}{l} \text{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text{1)임원의 퇴직소득금액} \times \text{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 / \text{전체 근무기간} \end{array} \right]$

(2) 퇴직소득 한도

$$\left( \begin{array}{l} \text{① 2019.12.31부터} \\ \text{소급하여 3년}^{\text{주2)}} \\ \text{동안 지급받은} \\ \text{총급여}^{\text{주3)}} \text{의} \\ \text{연평균 환산액} \end{array} \times \frac{1}{10} \times \frac{\text{② 2012.1.1부터} \\ \text{2019.12.31까지의} \\ \text{근무기간}^{\text{주4)}}}{12} \times 3 \right) + \left( \begin{array}{l} \text{③ 퇴직한 날부터} \\ \text{소급하여 3년}^{\text{주5)}} \\ \text{동안 지급받은} \\ \text{총급여의 연평균} \\ \text{환산액} \end{array} \times \frac{1}{10} \times \frac{\text{④ 2020.1.1} \\ \text{이후의} \\ \text{근무기간}}{12} \times 2 \right)$$

(3) 한도초과 시

-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1)-(2)은 회사의 반환계좌로 반환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
-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 한도 이내인 경우, (1)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주2) 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으로 한다.

주3)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비과세소득은 제외)

주4)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주5) 2020.1.1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의미하며 해당기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 유의사항

1. 한국투자증권은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합니다.
2. 임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의 판단에 따라 중도인출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3. 회사는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의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재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4. 이 서식은 임원 퇴직 시 작성하는 양식이며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회사명: \_\_\_\_\_(인)